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3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5월 24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“겸임”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행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며(안 제5조제3호),
- 나. 부설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 권한을 소속학교장 위임 사항에서 삭제함(조례 제6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별첨 3
 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3(겸임)
 - 2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의5(겸임)
 - 3)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 II-4.겸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- 다. 협 의 :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
- 라. 기 타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 - 입법예고(2019. 4. 30. ~ 5. 14.) : 의견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시보해제·대우공무원 선발·관내전보·휴직·복직·직위해제·의원면직·사망면직·경징계”를 “시보해제·대우공무원 선발·관내전보·휴직·복직·겸임·직위해제·의원면직·사망면직·경징계”로 한다.

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<u>시보</u> 해제·대우공무원 선발·관내전보·휴직·복직·직위해제·의원면직·사망면직·경징계</p> <p>3의2. ~ 36. (생략)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시보</u> 해제·대우공무원 선발·관내전보·휴직·복직·겸임·직위해제·의원면직·사망면직·경징계</p> <p>3의2. ~ 3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2. 부설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</u></p> <p>3. ~ 18. (생략)</p>	<p>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3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

【별첨 2】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안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겸임과 관련한 권한 변경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장학사 박윤정 (02-3999-359)

【별첨 3】

관계법규

■ [지방공무원법]

제30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일반직공무원을** 특정직공무원,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,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■ [지방공무원 임용령]

제7조의5(겸임)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1.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
2.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
3.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,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
2.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3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·대학·대학원 및 그 부설 연구소의 교수(부교수, 조교수를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
4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
-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.

■ [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]

II. 보직관리

4. 겸임(법 제30조의3, 임용령 제7조의5)

-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,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,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
 - ※ 예 : 초등학교 행정직·기술직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적·기술적 업무 겸임 가능
-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, 겸임기간은 2년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